

강화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강화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8년 8월 24일

강화군의회의장



1. 조 례 명 : 강화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「강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」의 개정(2018.8.14 시행)에 따라 변경된 직제개편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군수의 보조기관 중 “담당 실·과장급”을 “국장, 실·과장급”으로 변경

4. 개정 조례안: 붙임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18년 8월 29일까지 강화군의회의장(의회사무과장)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(☎930-3506)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라. 보내실 곳 : 강화군의회 의회사무과

- 팩 스 : 032-930-3509

- 주 소 : (23031)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(강화군청)

강화군의회 조례 제 호

강화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
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강화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담당 실·과장급”을 “국장, 실·과장급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2조(범위) (생 략) 1. (생 략) 2. 군수의 보조기관중 <u>담당 실·</u> <u>과장급</u> 3. ~ 4. (생 략) | 제2조(범위)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국장, 실· 과장급 3. ~ 4. (현행과 같음) |

【관계법령발췌서】

강화군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에 따라 강화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11.13., 2015.11.9.>

제2조(범위) 강화군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개정 2015.11.9.>

1. 부군수
2. 군수의 보조기관 중 담당 실·과장급<개정 2015.11.9.>
3. 「지방자치법」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장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<개정 2007.11.13., 2015.11.9.>
4.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강화군 본청의 실·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<개정 2015.11.9.>

제3조(준용) 관계 공무원이 교육, 출장, 공가,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「강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」을 따른다. 다만, 회의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.<신설 2015.11.9.>

부 칙 (1991. 4.10 조례 제1292호)

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7.11.13 조례 제1913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2241호, 2015.11.9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지방자치법

- 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13조(직속기관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(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), 소방기관, 교육훈련기관, 보건진료기관,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제114조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5조(출장소)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16조(합의제 행정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17조(하부행정기관의 장)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, 읍에 읍장, 면에 면장, 동에 동장을 둔다. 이 경우 면·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·행정동을 말한다